## 오산시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에 관한 조례

제정 2023년 3월 31일 조례 제2045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오산시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, 야간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시민들의 주차편익을 증진하고, 주변상권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주차장"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「주차장법」 제2조에 따른 노상주 차장,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.
- 2. "공공기관"이란 오산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본청과 소속기관, 출자·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.
- 3. "관리주체"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.
- 제3조(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의 지정) 오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「주차장법」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판단되거나, 야간 무료개방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주차장을 야간에 무료개방 할 수 있다.(이하 "개방주차장"이라 한다)
- 제4조(개방주차장의 표시설치) ① 개방주차장의 표지설치 비용은 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- ② 개방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,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, 주차장의 위치·규모·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리주체가 정한다.
  - 1. 개방주차장의 이용시간
  - 2. 개방주차장의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
  - 3. 개방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

## 오산시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에 관한 조례

- 4. 개방주차장 이용 중 사고시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
- 5. 개방주차장 내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
- 6. 그 밖의 주의사항
- 제5조(이용자 준수사항)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1. 개방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, 경음기 사용을 자제할 것
  - 2. 개방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할 것
  - 3. 개방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할 것
  - 4. 영업을 목적으로 한 개방주차장 내 활동을 금할 것
- 제6조(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)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 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 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.
- 제7조(방치차량에 대한 조치) ① 개방주차장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6조에 따라 시장에게 조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시장은 「오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.
- 제8조(주차거부 등)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.
  - 1.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개방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
  - 2. 개방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- 3.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
  - 4. 개방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
  - 5. 이용자가 개방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
  - 6.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개방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
  - 7. 그 밖에 관리주체가 개방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제9조(감독) 시장은 효율적인 개방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